

이천시 공원묘지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1996·3·1 훈령 제3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제5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공원묘지(이하 “공원묘지”라 한다)를 권한 위임시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권한위임) 공원묘지중 대월면, 설성면 공원묘지는 당해 면장에게 공원묘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시킨다.

제3조(위임사항) 이천시공설묘지에 관한 조례 및 규칙과 관리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관리한다.

제4조(관리인의 고용 및 지정) 공원묘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은 시장이 따로 배치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